

학생생활규정

[2025.12.26. 개정]



동화고등학교

차례

제1장 총칙	1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2
제3장 학생지도의 방식	2
제4장 학생 권리와 의무	6
제1절 권리와 의무	
제2절 기본생활	
제3절 용의복장 및 교복·체육복	
제4절 학교내·외 활동	
제5절 정보통신	
제6절 환경과 안전	
제7절 자기정보 결정권	
제8절 학업중단 예방	
제5장 학생자치회	12
제1절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2절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관리 규정	
제3절 학급자치회 규정	
제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21
제1절 총칙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28
※ 붙임	
제1호 서식 교복·체육복 사양서	제12호 서식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제2호 서식 위원 공고	제13호 서식 개표 결과서
제3호 서식 선거일 공고	제14호 서식 선거 운영 보고서
제4호 서식 투표자 명단	제15호 서식 당선자 공고
제5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16호 서식 이의 신청서
제6호 서식 추천장	제17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 중 ‘제5항 31호 근태관련’의 세칙
제7호 서식 후보자 등록 공고	제18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 중 ‘제6항 32호 약물흡연 관련’의 세칙 - 음주, 흡연 학생 생활교육처분 기준
제8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제9호 서식 후보자(사퇴) 공고	
제10호 서식 선거운동 도우미 등록 신고서	제19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에 관한 각종 처벌 관련 세칙
제11호 서식 투표 용지 예시	

학생생활규정

동화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동화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스스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6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학생지도의 방식

제7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앞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뒤에 서 있기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학생 학년부 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에게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내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나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실 뒤에 서 있기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학부모에게 지도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기타				

- ⑧ 학교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험을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 빔 기기 등	3일	생활인권안전부 물품보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장에게 신고 ※ 학교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제7조에 따른 조언, 제8조에 따른 상담, 제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0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2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사항]

- ① 학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4장 학생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와 의무

제16조[권리]

-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②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④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⑦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혐오 표현을 받지 않을 권리
- ⑧ 청소년 미혼모, 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

- ⑨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 ⑩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자살예방 교육등을 교육받을 권리
- ⑪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⑫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⑬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⑭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

제17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무]

-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⑦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 ⑨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공공 질서,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받을 의무
- ⑩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에 응할 의무

제2절 기본생활

제19조[생활]

-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20조[예절]

-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이성교제]

- ①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 ②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출입의 제한]

- ①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3절 용의복장 및 교복 · 체육복

제23조[두발] 학생 두발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한다.

- ① 학생의 두발 길이는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② 파마나 염색, 헤어제품을 사용한 과도한 머리 모양의 변형은 학생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복장]

- ①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지정된 교복 및 체육복, 생활복)으로 생활한다.(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제25조[용모 및 장신구]

- ① 고가의 보석이나 과도한 장신구 착용 및 피어싱은 금지한다.
- ②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신발 및 가방 등] 신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① 평상시 신발은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
- ② 체육시간에는 운동화만 착용한다.(축구화, 런닝화 가능)
- ③ 학교 실내에서는 실내화(또는 슬리퍼)를 착용한다
- ④ 굽이 높은 구두나 부츠, 샌들,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는 것은 금지한다.
- ⑤ 책가방의 형태는 자유롭게 하되 선정적인 문구나 그림은 금지하며, 고가의 제품은 지양 한다.

제27조[교복·체육복] 지정된 교복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다.

- ① 교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입는다.
 1. 겨울철 : 동복
 2. 봄, 가을 : 춘추복

3. 여름철 : 하복
 4. 신체적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교복의 인위적 변형은 금지한다.
- ②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복의 부착물은 지정된 곳에 항상 부착한다.(학교 배지)
 - ④ 동복, 춘추복을 입는 기간 중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 ⑤ 학교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 등교할 때는 항상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여학생은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 ⑥ 체육복은 해당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만 착용한다.
 - ⑦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
 - ⑧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4절 학교내·외 활동

제28조[등.하교]

-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 ②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29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30조[수업시간]

- 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제31조[수업 외 시간]

- ①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 ③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32조[공공기물의 파손]

-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 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33조[환경 및 청소]

- ①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34조[봉사활동]

-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 ② 자발적으로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35조[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들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일과 시간 이외 교내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②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③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④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36조[학교 외 활동]

-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 ②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행동한다.
-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 담배(전자담배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 ⑦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장은 학생에게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5절 정보 통신

제37조[사이버생활]

-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악플)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 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38조[정보통신기기] 교내에서의 개인 통신기기 관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 한다.
- ②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도 위의 사항에 준한다.
- ③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 전화를 분리·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⑫항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을 따른다.

- ④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환경과 안전

제39조[음식물]

-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 ③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시에는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40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 ① 일반쓰레기
- ② 재활용품
- ③ 음식물쓰레기

제41조[소지품]

-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흥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 ③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⑤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⑦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흥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①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 ③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 ④ 물놀이, 등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제7절 자기정보 결정권

제43조[개인정보 열람·청구·정정·삭제]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4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생활인권규정 게시판에 공지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8절 학업중단 예방

제45조[학업중단 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 5장 학생자치회

제1절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46조[명칭] 이 회는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이하 "학생자치회"로 칭한다.)

제47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제48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유예 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학생총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49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각 부서 부장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회 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5.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 6.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50조[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본 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기획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② 문화예술부 : 학, 예술 활동 및 교양 등에 관한 사항
- ③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④ 홍보부 :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⑤ 학생인권부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의 기획과 홍보 등 각종 캠페인 관련 사항
- ⑥ 소통부 :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⑦ 동아리연합부 : 동아리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
- ⑧ 미디어부 : 미디어에 관련된 모든 사항
- ⑨ 회계, 서기 :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후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

제51조[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 ② 학생총회는 학생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2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 2. 학생자율동아리
-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6.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1인(2학년), 부회장 2인(2학년)
2. 각 부의 부장 1인(2학년), 차장 1인(1학년)

제54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 ④ 각부 부장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5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장, 부회장은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비밀 투표로 선출,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5장 제2절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② 부장, 차장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장은 차장이 학년 진급에 의해 당연 임명되는 것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2. 학생자치회 각부 차장은 1학년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고,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하며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3.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학 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제2항 1호와 2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10월~11월 중에 1학년 후보자 중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다음 학년도로 한다.

제56조[자격 및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2.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57조[임원의 해촉]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 재적 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58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생활인권안전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관리 규정

제59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이하 "회장단 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제61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회장단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1학년 ~ 3학년 희망자 중에서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9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 ⑨ 위원회 위원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중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은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62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63조[선거권자] 회장단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64조[투표자 명단 작성]

-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령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65조[후보자 자격]

- ① 회장단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66조[후보자 등록]

- ① 회장단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5호 서식) 1부
 - 2. 추천장(붙임 제6호 서식) 1부
 - 3. 공약서 1부
- ② 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단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④ 회장단 후보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의 러닝메이트 형태로 등록해야 한다.

제67조[등록무효화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68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5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69조[후보자 홍보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40cm, 세로 55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흥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70조[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 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71조[어깨띠·피켓 등]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 가. 후보자간 다툼
 -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 ④ 부정선거나 선거무효 판정은 학교장이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3조[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74조[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붙임 제11호 서식)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2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75조[개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2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기표란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3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 운영 보고서 (붙임 제14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76조[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단 선거의 후보자 팀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팀을 회장단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단 후보가 1팀인 경우에는 후보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그 후보팀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 팀이 2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 팀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팀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④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5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77조[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 1. 단일 후보팀이 출마하고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였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8조[보궐선거]

- 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회장 2명 중 한 명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9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80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67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81조[보칙]

-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절 학급자치회 규정

제82조[명칭] 이 회는 '동화고등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이하 "학급자치회"로 칭한다.)

제83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84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85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 선교부장 1명을 두고, 학급운영에 필요한 여러 부서를 구성하여 각부 부장을 선출한다. 부서의 수와 명칭은 학급 구성원 및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 부회장 의견,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86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 학생이 선출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 ③ 기타 각 부서 부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자 중 학급자치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급자치회에서 회장·부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할 시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87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제88조[임원의 해촉]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급자치회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과 의결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89조[임원의 임기]

-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학 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0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짐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급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급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절 총칙

제91조[명칭] 이 규정은 ‘동화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 규정’ 이라 한다.

제9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94조[생활교육원칙] 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증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95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단일기구)를 둔다.

제9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동 및 실제지도
5.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97조[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 심의(학년부장,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4.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생활인권안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

제98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9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 ⑤ 위원회 위원 중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 신청이 없는지 확인한다.
- ⑥ 제척·회피 시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회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한다.

제100조[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반드시 통보한다.

제101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2조[간사]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 ③ 소위원회(소생활교육위원회, 학년생활교육위원회)에서 약식 징계를 금지한다.

제10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104조[징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징계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상한을 지켜 실시한다.

제105조[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6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돋운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돋운다.
- ⑤ 퇴학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106조[퇴학처분 전 조치]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7조[징계사실의 공표금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108조[생활교육의 기준] 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항	제호	내용	징계기준	비고

			교 내 봉 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 석 정 지	퇴 학	
① 품행관련	1	교복 및 두발 규정을 위반한 학생 (1차 적발·훈계, 2차 적발·반성문, 3차 적발·교내봉사, 교내봉사 중 또는 이후에도 반성이나 개전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중 처벌)	●	●				
	2	등·하교 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학생	●	●	●	●		
	3	언행불량으로 주민이나 내교자에게 진정을 받은 학생	●	●	●	●		
	4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학생	●	●	●	●	●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② 준법관련	6	교문 이외의 울타리를 넘어 등교나 외출한 학생	●	●	●	●		
	7	유흥업소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적발된 학생	●	●	●	●	●	
	8	범법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연행된 후에 훈방된 학생	●	●				
	9	학교 기물이나 게시물을 고의로 파손 훼손한 학생	●	●				변상 조치
	10	교내 CCTV를 고의로 파손 훼손한 학생				●	●	변상 조치
	11	학생금지물품(흉기, 악물류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12	기타 교외에서 위법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13	공문서를 위, 변조하여 불순한 목적에 사용한 자		●	●			
③ 수업관련	14	학습 태도가 불량하여 다수 지적받았으나 개전의 여지가 없는 학생(집담, 군것질, 핸드폰 사용 등)	●					
	15	의도적으로 수업 및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1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모의에 가담한 학생	●	●	●			
	17	수업, 시험, 등교를 거부하거나 거부를 주도한 학생			●	●	●	
	18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절취한 학생				●	●	
	19	수업을 매시간 방해하고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학생	●	●	●	●		

제 항	제호	내용	징계기준					비고
			교 내 봉 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 학	
④ 풍기 문란 관련	20	음란물을 소지 또는 유포한 학생	●	●				
	21	교,内外에서 동성 또는 이성과 불건전한 접촉을 한 학생	●	●	●	●		
	22	신체에 문신 또는 피어싱을 한 학생	●	●	●	●		
	23	학생출입 금지 장소를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24	불법 아르바이트(유흥업소, 도우미)를 한 학생		●	●	●		
	25	도박을 한 학생(상습적인 학생은 가중처벌)	●	●	●			
	26	본인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고의로 출입한 학생	●	●	●			
⑤ 근태 관련	27	미인정지각, 조퇴, 결과, 결석 관련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혀 개전의 여지가 없는 학생(허위 질병이나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	●	
⑥ 약물 흡연 관련	28	교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학생	●	●	●	●	●	
	29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 등을 사용한 학생			●	●	●	
⑦ 금품 절취 관련	30	교내에서 절도를 하거나 교사, 공모, 방조한 학생	●	●	●	●		
	31	일과 중 빈 교실에 허락없이 무단 침입한 학생	●					
	32	온라인 금품절취 및 불법도박을 한 학생		●	●			

- ① 항목별 횟수와 사안의 동기, 증거, 정황 등의 성격과 경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② 동일 학년에 2회, 재학 중 3회 이상 생활교육을 받은 때에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 ③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체험학습 등) 중 교사의 지시 불이행과 제반 사고에 대해서도 본 규정에 준 한다.
- ④ 생활교육 기준 이외의 사안, 경증에 따른 차등 적용, 가중치 적용 등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⑤ 폭행에 대한 생활교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⑥ 본 규정은 학교 운영 실정에 따라 실시하되 동일 사건으로 여러 학교가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관내 공동학생생활교육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3조 생활교육기준 중 ‘제5항 27호 근태관련’의 세칙

■ 근거 : 학교생활규정 제 108조[생활교육의 기준]

항	호	내 용	징계기준
⑤ 근태 관련	27	①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5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2회 이상	• 교내봉사
		②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7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3회 이상	• 사회봉사
		③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0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5회 이상	• 특별교육이수
		④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5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8회 이상	• 출석정지(3일)
		⑤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0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12회 이상	• 출석정지(7일)
		⑥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5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15회 이상	• 출석정지(10일)
		⑦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0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20회 이상	• 출석정지 및 퇴학

※ 횟수는 1일 1회로 기록된다.

※ ①~⑦의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의 합은 당해 연도 분기별 누적 횟수를 의미한다.

(1학기의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의 합은 2학기에 누적 적용하지 않는다.)

※ 미인정으로 수업시간에 불참 또는 수업에 늦게 참여하거나, 교육활동(수업의 진행)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등에는 결과처리를 할 수 있다.[관련: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109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재심의 신청 및 절차]

-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1조[재심청구]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 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재심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여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 심의한다.
 3. 2의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이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심의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재심청구안을 고지해야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의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피청구인
 -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 ③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은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112조[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3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 응답 : 담당부서.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 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 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 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 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 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 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한다.

제114조[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체험학습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6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 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 · 개정 절차

제117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 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8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9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함,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20조[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며,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2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3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24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25조[연수 및 교육]

- ①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27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동화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으로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23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기존 규정과 상충될 때 고시내용을 반영한 제1창(총칙), 제2장(생활지도의 범위), 제3장(생활지도의 방식)이 우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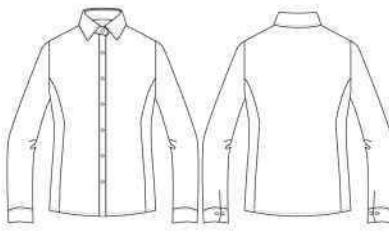
② (준 용)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붙임 제1호 서식]

동화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 동복 (춘추복)

분류	디자인	재질 (섬유혼용률)	제작시 유의사항 (디자인 특징 및 주안점)
남학생 상의 (재킷)		양모(율) 60% 폴리 40% (안감) 폴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색 이중 개버딘조직 * 원 가슴 주머니에 학교 와펜 부착 * 카라라인, 옷여밈 라인까지 회색 0.8cm 회색 파이핑 처리 * 입술, 후다 주머니 * 2버튼  
여학생 상의 (재킷)		양모(율) 60% 폴리 40% (안감) 폴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색 이중 개버딘조직 * 원 가슴에 학교 와펜 부착 * 허리 주머니 입술, 후다 * 카라라인에 0.8cm회색 파이핑처리 * 2버튼  
바지		양모(율) 60% 폴리 40% (안감) 폴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색 * 기본 신사바지 노턱(no tuck) 스타일 * 앞판 양쪽 허리 조절 깡지퍼 * 양쪽 주머니 * 뒷주머니 왼쪽에 단추 1개
치마		양모(율) 60% 폴리 40% (안감) 폴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색 * 앞판 오른쪽 허리 조절 깡지퍼 * 좌우 5cm 외주름 2개씩 처리 * 주름스티치 : 20cm

니트 조끼		양모(율) 50% 아크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색 브이넥 니트 조끼 * 원 가슴에 학교 와펜 부착 * V넥라인에 0.7cm 회색라인 배색 * 넥라인 꽈배기 무늬
와이셔츠		폴리 78% 레이온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색 싱글 스타일의 긴팔셔츠 * 원 가슴에 아웃포켓 1개 부착 * 각 카라 * 넥 안쪽, 소매 안쪽에 동일한 체크배색 
블라우스		폴리 78% 레이온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색 * 라운드형 카라 긴팔셔츠
넥타이 / 리본		폴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붉은색 바탕의 노란색, 곤색 대각선 줄 무늬
카디건		양모(율) 50% 아크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색 브이넥 카디건 * 원 가슴에 학교 와펜 부착 * 넥라인에 곤색 4mm, 그레이 13mm 배색 * 소매, 몸판 밑단에 5mm 그레이 배색 처리 * 단추 6개

2. 하복

분류	디자인	재질 (섬유혼용률)	제작시 유의사항 (디자인 특징 및 주안점)
와이셔츠		폴리 78% 레이온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가슴에 아웃 포켓 부착 * 왼 가슴 주머니에 학교 와펜 부착 * 넥 안쪽, 소매단 안쪽에 동일한 체크 배색 * 주머니, 소매에 8mm 회색 배색처리 * 단추 여밈 라인에 붉은색, 회색 사선 배색처리 16mm (간격 11mm) * 넥 안쪽, 소매 안쪽에 동일한 체크배색 
블라우스		폴리 78% 레이온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 가슴에 학교 와펜 부착 * 스탠카라 백색 반상의 * 주머니, 소매 8mm와인배색처리 * 단추 여밈 라인에 붉은색, 회색 사선 배색처리 12mm (간격 13mm) * 앞 벌어짐 방지 처리
리본		폴리 100%	* 하복 블라우스 배색과 동일한 색상
바지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색 * 기본 신사바지 노턱(no tuck) 스타일 * 앞판 양쪽 허리 조절 깡지퍼 * 양쪽 주머니 * 뒷주머니(단추 1개)
치마		양모(울) 60% 폴리 40% or 양모(울) 50% 폴리 50% (안감) 폴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회색 * 앞판 오른쪽 허리 조절 깡지퍼 * 좌우 5cm주름 2개씩 처리 * 주름스티치는 허리에서 12cm로 한다.

생활복 상의 1		기능성 폴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 안쪽, 학교, 옆트임 사이드밴드에 하늘색 사선 스트라이프 배색 * 왼 가슴 주머니에 명찰 후다 * 학교 사이즈 : 1.2x7.2cm * 소매, 등판에 하늘색 사선 스트라이프 파이핑 * 왼쪽 가슴주머니 밑 학교 로고 부착 * 양쪽 허리 밑단에 5cm 트임 
생활복 상의 2		기능성 폴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색 * 민무늬 * 왼 가슴에 학교 로고 부착 * 라운드 목부분이 넓을 것
생활복 반바지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색 * 민무늬 * 경사 지퍼 주머니 * 일자 통바지 형태
생활복 긴바지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색 * 민무늬 * 경사 지퍼 주머니 * 일자 통바지 형태

※ 기타 유의사항은 견본(현품)을 기준하여 제작

3. 간편복 (동복 및 하복 반바지)

분류	디자인	재질 (섬유혼용률)	제작시 유의사항 (디자인 특징 및 주안점)
간편복 상의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색(네이비) * 원 가슴에 학교 와펜 부착 * 양팔에 흰색 두 줄무늬
간편복 하의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색(네이비) * 민무늬 * 경사 지퍼 주머니
간편복 반바지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색(네이비) * 옆선에 흰색 두 줄 무늬 * 경사 지퍼 주머니

※ 기타 유의사항은 견본(현품)을 기준하여 제작

[붙임 제2호 서식]

위원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동화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위원명단

구분	학 년.반	성명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붙임 제3호 서식]

선거일 공고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동화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1. 선거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기간			
합동소견발표회			
투표일			
개표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 다.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학년에, 부회장은 ○학년 또는 ○학년에 재학중인 자
- 나. 선거권자 20명이상 3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 성적 등의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붙임 제4호 서식]

투표자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번호	성명	서명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작성년월일 : 년월일

작성자 : ○학년 ○반 학급자치회장 (서명)

※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5호 서식]

학생자치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단 선거의 후보로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후보자	학번	이름
회장		
부회장		
부회장		

불임. 후보자 추천서 1부
후보자 공약서 1부
후보자 공정선거 서약서 1부

100

신청인 대표: (인)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6호 서식]

학생자치회장 후보자 추천장

■ 추천후보자

후보자	학번	이름
회장		
부회장		
부회장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후보자 추천자 명부 1부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 추천인 명부>

연번	학번	이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붙임 제7호 서식]

후보자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회장단 선거 후보자 명단

회장후보자					부회장후보자							
기호	학년 . 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 . 반	성별	성 명	○ 학년		○ 학년		
								기호	학년 . 반	성별	성 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붙임 제8호 서식]

학생자치회장 후보자 사퇴 신고서

본인은 학생자치회장 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구분	기호	후보자명단	사유

한국어

신고인 대표: (인)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9호 서식]

후보자 (등록무효) (사회) 공고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
이 (등록무효) (사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등록무효) (사회) 후보자 명단>

구분	기호	후보자명단	(등록무효) (사회) 연월일	사유

년 월 일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붙임 제10호 서식]

선거운동 도우미 등록 신고서

※ 유의사항

- 가. 선거운동도우미는 15명 이하로만 구성 가능하며, 선관위에서 공지한 일정 이내에 후보자가 직접 선관위로 제출해야 한다.
 - 나. 선거운동 도우미 활동은 학교에서 지정한 선거운동기간에만 등록 신고된 인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다.
 - 다. 선거운동 도우미에 의한 불공정 행위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후보자에 있다.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학생자치회장 선거운동을 위한 도우미를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 ◎ 후보자 기호 : _____ 번
- ◎ 선거운동 도우미 명단

연번	학번	이름	연번	학번	이름
1			9		
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한국어

신고인 대표: (인)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1호 서식]

투표용지

학 생 회 장 단 선 거

1		
2		



[붙임 제12호 서식]

학생자치회장 선거 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에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선거의
개표 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후보자 기호 : _____ 번
◎ 개표 참관인 명단

후보자	학번	이름
참관인1		
참관인2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인)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3호 서식]

작성자	부위원장	협조	위원장

학생자치회장 선거 개표 결과서

◎ 투표 및 득표 결과

선거인수(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합계(다)
기호 1	기호 2	기호 3	기호 4	기호 5	기호 6	

무효표(라)	기권자수(마)

◎ 참관인 확인

기호	서명	기호	서명	기호	서명
1		2		3	
4		5		6	

선거 개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합니다.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학년도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제14호 서식]

작성자	부위원장	협조	위원장

학생자치회장 선거 운영 보고서

작성일시	
선거운영 일정보고	
선거결과 보고	
선거지원비용 결산	
특이사항 보고	
운영 과정에서의 우수점에 대한 성찰	

향후 보완사항에 대한 성찰	
불임서류 목록	(선거기간 중 제출받은 전체 서류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상기와 같이 학생자치회 선거 결과를 보고합니다.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학년도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제15호 서식]

당선자 공고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장 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이 공고합니다.

<당선자 명단>

회장		부회장	
학년.반.	이름	학년.반.	이름

년 월 일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붙임 제16호 서식]

선거 (운영)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학년 . 반	이 름
신청자		
이의신청 내용 요약		
세부 설명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7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 중 '제5항 31호 근태관련'의 세칙

■ 근거 : 학생생활규정 제93조 [생활교육 기준]

항	호	내용	징계기준
⑤ 근태 관련	35	①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0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3회 이상	교내봉사
		②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5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5회 이상	사회봉사
		③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0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8회 이상	특별교육이수
		④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5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12회 이상	출석정지(3일)
		⑤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0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15회 이상	출석정지(7일)
		⑥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5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20회 이상	출석정지(10일)
		⑦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45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30회 이상	출석정지 및 퇴학

※ 횟수는 1일 1회로 기록된다.

※ ①~⑦의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의 합은 당해연도 1년 누적 횟수를 의미한다.

※ 미인정으로 수업시간에 불참 또는 수업에 늦게 참여하거나, 교육활동(수업의 진행)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등에는 결과처리를 할 수 있다.[관련: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붙임 제18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 중 '제6항 32호 약물흡연 관련'의 세칙 - 음주, 흡연 학생 생활교육처분 기준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음주 또는 흡연으로 간주한다.

1.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2. 술 또는 담배를 소지한 것이 발각된 경우
3. CCTV나 휴대전화에 음주 또는 하는 모습이 확인된 경우
4. 음주측정 양성 반응인 경우 또는 흡연측정기 결과가 7 이상인 경우
5. 학생 본인이 사실을 진술할 경우

■ 단계별 생활교육처분 기준

적발 횟수	생활교육처분 내용	지도사항
1회	생활교육처분(교내봉사 등)	청소, 금연 캠페인 및 교육 자기계발
2회	생활교육처분(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교감선생님과 상담
3회	생활교육처분(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특별교육이수기관 안내 (서울 북부 청소년 꿈센터)
4회	생활교육처분(특별교육 및 출석정지)	
5회	생활교육처분(특별교육 및 출석정지)	출석정지 3일, 7일, 10일 가정학습 및 상담 교장선생님과 상담
6회	생활교육처분(특별교육 및 출석정지)	
7회	생활교육처분(출석정지 및 퇴학)	교사지시 불이행 및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에 관한 가중 처벌 관련 세칙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

1. 징계 처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거부한 경우
2. 징계 처분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
3. 징계를 받고 난 이후 동일 사항에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4. 징계를 받고 있는 중 동일 또는 다른 사항에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 단계별 가중 처벌 기준

징계 기준	가중처벌 내용	지도사항
교내봉사	1차 : 교내봉사 3일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반성문 작성 교감선생님과 상담
	2차 : 교내봉사 5일	
	3차 : 교내봉사 7일 또는 사회봉사로 상향 조정	
사회봉사	특별교육으로 상향 조정	특별교육이수기관 안내 (서울 북부 청소년 꿈센터)
특별교육	출석정지로 상향 조정	출석정지 3일, 7일, 10일 가정학습 및 상담 교장선생님과 상담
출석정지	출석정지 및 퇴학	교사지시 불이행 및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가중 처벌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가중 처벌에 관한 징계 기준 및 가중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